

【 4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8. 9. 11.

제출자 : 양 주 군 수

□ 제안이유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군정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설치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통합 관리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현행 9개조례 → 1개조례)

□ 주요골자

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직급과 본청 및 실·과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2조)

- 직속기관(2)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3) :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나. 본청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함. (안 제4조)

- 실·과(13)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주요개편내용

- 신설(1) : 민원실

· 폐지(2) : 사회진흥과, 지적과

· 통폐합(3)

- 사회과 +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

- 산업과 + 축산과 + 산림과 ⇒ 농림축산과

· 명칭변경(1) : 내무과 ⇒ 총무과

다. 군수의 소속기관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정함.

(안 제5조 내지 제20조)

○ 직속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2), 보건진료소(5),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7)

· 직속기관 주요 개편내용

- 폐지(1) : 동두천시 농업인상담소

- 통폐합(5) : 은현 + 남 + 광적 → 상수통합보건지소(2)

회천, 주내, 백석 → 보건소에 통합(3)

- 명칭변경(1) :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 :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 사업소 주요 개편내용(4개소 → 3개소)

- 통폐합(1) : 군립도서관 → 문화관광사업소

- 명칭변경(1) : 상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하부행정기관 : 7개 읍·면, 회천읍 덕계출장소

라.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정함. (안 제2조 내지 제5조)

○ 다른조례의 폐지(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조례 8개)

○ 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 및 보건지소에 관한 경과조치

○ 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군 조례 제 호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 · 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 과장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 ·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부 군 수

제3조(부군수) ①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는 다음사무를 관장한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사항
2.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

### 제3장 군 본 청

제4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실, 총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 가.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 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 다.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업무 협조
  - 라. 법제 및 소송업무
  - 마. 지방재정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바. 지방채 운영 및 관리
  - 사.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시행
  - 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 자. 군수공약사항 추진
  - 차. 학교유치 및 교육청과의 업무 협조
  - 카. 군행정의 감사
  - 타. 진정서 처리 및 비위조사
  - 파.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경영수익, 장기발전추진 행정에 관한사항

## 2. 문화공보실장

- 가. 문화공보 계획의 수립 실시
- 나. 언론공보 자료의 수집 편찬
- 다. 군정의 계몽선전 및 보도
- 라. 홍보매체의 보급 육성
- 마. 자치법규의 공고계재, 공고, 고시업무 및 계시판관리
- 바. 출판사, 인쇄소의 등록
- 사. 자유수호 계몽 및 관련단체 육성 지원
- 아.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 자. 문화재, 전적기념물의 보호관리
- 차. 향교, 사찰의 재산관리 지도
- 카.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 타. 관광선전 및 개발
- 파. 관광지, 유원지개발 및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
- 하. 군지편찬 및 자료수집 분석
- 거. 체육공원 조성
- 너. 국민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활동 지원
- 더.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 러.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협조
- 머. 국제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버.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
- 서. 기타 문화관광, 공보행정, 생활체육, 청소년에 관한사항

## 3. 민원실장

- 가. 민원실의 설치 운영
- 나. 호적, 주민등록증, 행정서사, 소개영업, 인장업
- 다. 위민업무에 관한 사항
- 라.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민원처리기간 단축, 절차간소화등 제도개선, 주민편의시책개발 등)

- 마. 민원 1회방문 처리상황의 종합관리
- 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평가 및 시책보완 개선
- 사. 토지거래 허가, 부동산 중개업 및 택지소유부담금, 개별공시지가
- 아.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및 소유권정리에 관한 사항
- 자. 토지기록 전산화 시스템관리 및 법인아닌 사단, 재단등록번호 부여
- 차.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 카. 대행법인 지도감독 및 측량자료(기초점) 관리
- 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파. 기타 민원, 부동산관리, 지적에 관한사항

#### 4. 총무과장

- 가. 직제, 정원, 인사
- 나. 포상 및 의전행사
- 다. 공무원의 보수, 후생복지, 연금, 교육
- 라. 행정구역 개편
- 마. 선거 및 국민투표
- 바. 각종 위원회 관리
- 사. 지방행정 시책 업무
- 아. 당정협조에 관한 사항
- 자. 서무
- 차. 보안업무
- 카. 복무단속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감독
- 타. 사무관리 및 제도개선
- 파.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및 보존관리
- 하. 공인관리
- 거. 방위협의회 운영
- 너. 충무계획 주민 및 관서이동

더. 통계조사

- 러.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 시책의 종합계획 조정통제
- 머. 새마을지도자 관리
- 버. 새마을 국민교육
- 서. 새마을 금고, 문고의 지도·육성 감독
- 어.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지도·육성 관리
- 저. 통신시설 및 행정장비 유지관리 개선
- 처. 행정장비 전반에 관한 사항
- 커.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업무의 조정통제
- 터. 기타 인사, 서무, 새마을, 통계, 전산, 통신에 관한 사항

5. 재무과장

- 가. 지방세(군세) 제도의 운영
- 나.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국세위탁 징수
- 다. 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조사
- 라. 기부금품 통제
- 마. 군 금고 지도감독 및 자금관리
- 사. 세출예산의 경리
- 아. 물품의 구입, 조달, 출납, 보관관리
- 자. 지출원 사무
- 차. 공채, 국채, 금융관련 채권 관리
- 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 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리
- 파.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위임관리 국유재산의 처분·대부 및 관리
- 하. 물품출납, 보관 및 처분
- 거. 차량운영 및 운전원관리
- 너. 청사관리 및 영선에 관한사항
- 더. 기타 세무, 세외수입, 경리, 용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사회복지과장

- 가. 생활보호, 구호, 후생, 원호대책
- 나. 사회복지 법인의 지도감독
- 다. 장애인 복지 업무
- 라. 의료보호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
- 마. 행여사망자 처리
- 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 사.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 아. 부녀아동 복지법인의 지도감독
- 자.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 차.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 카. 부녀자의 직업보도
- 타.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 파. 아동복지 증진
- 하.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운영 지도감독
- 거. 부랑자 방지
- 너.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 더. 노인복지 대책
- 러. 가정의례준칙 지도
- 머. 접객업, 유홍업, 유기장에 대한 허가·단속
- 버. 유해음식물 단속
- 서. 접객부 및 종업원의 등록, 위생지도
- 어. 기타 사회, 위생, 가정, 부녀업무에 관한 사항

## 7. 환경보호과장

- 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조정
- 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
- 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 라.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 마.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 바. 청소업무
- 사.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 아. 오수정화시설 설치 운영 및 지도단속
- 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환경감시 관련 업무
- 차.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 8. 농림축산과장

- 가.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나.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 다.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 라.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 마.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 바.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업무
- 사.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 아. 임업증산 및 기술보급
- 자. 수자원보호 및 수산물 증식등 수산업무에 관한사항
- 차. 축산행정의 종합 기획
- 카.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및 공수의 지도감독
- 타. 도축장 및 가축시장 관리
- 파.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판매 지도감독
- 하. 식육 판매업소 영업신고 및 관리
- 거. 가축 방역사업
- 너.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및 축산단지 조성 관리
- 더. 사료수급 계획 및 관리
- 러.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머. 산림기본계획 수립
- 버. 국공유 임야 관리
- 서. 농업용수원의 개발, 보존관리 및 관계개선

어. 경지정리 및 개간

저. 기타 산업, 축산, 기반조성, 산림에 관한사항

## 9. 지역경제과장

가.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다.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진흥

라. 시장개량 및 관리

마.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무

바. 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사. 공업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아. 공장등록

자. 공산품 품질관리

차.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 업무

카. 철도교통 업무

타.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파.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무

하. 에너지 소비절약

거. 교통질서제도분야 관련업무

너. 노동대책

더. 직업알선 및 직업안내소 지도감독

러. 기타 지역경제 · 상공 · 운수 ·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 10. 건설과장

가.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감시(비법정하천포함)

나. 도선 및 유선에 관한 업무

다. 중기 및 특수차량의 관리운영

라.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지도감독

- 마. 도로의 포장 및 유지관리(농어촌, 비법정도로 포함)
- 바. 도로안내판의 설치 및 보존관리
- 사.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관리
- 아. 소도읍 가꾸기 및 광고물 관리 등 개발행정
- 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차.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 카. 기타 건설에 관한 사항

## 11. 도시과장

- 가. 군 도시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 나.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보상
- 다.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 라.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
- 마. 군 건설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 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관한 사무
- 사. 공업단지 조성(공영개발 방식)
- 아.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
-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업무
- 차. 군사시설보호법 관련업무 및 단순민원업무
- 카. 경원선 복선 전철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타. 기타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 12. 주택과장

- 가. 전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 단속
- 나.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 다.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관리감독
- 라. 주택자재 생산업자 관리
- 마. 택지조성의 종합계획 및 설계

- 바.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 사. 공공시설 건립 추진
- 아. 건축물 대장 관련 민원처리(전환, 합병, 정정, 말소, 변경)
- 자. 그 밖에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 13.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가. 민방위계획의 수립 시행
- 나. 민방위장비 유지 관리
- 다. 민방위대 조직, 편성, 동원
- 라.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확인, 조정 및 실시
- 마.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집행
- 바. 의용소방대 운영지도
- 사. 병사업무(예비군 포함)
- 아.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 총괄
- 자. 그 밖에 민방위,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 제5조(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의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통합보건지소 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 ②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둔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과 제2항 규정에 의한 보건 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6조(소장)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업무) ①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8조(설치) ①법 제104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등을 관찰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관내 농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농업기술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둔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제9조(소장) ①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농업인 상담소에 상담소장을 두며 상담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업무) ①농업기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찰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 및 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6.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7. 농업인교육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사항

② 농업인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내방 농업인 상담 및 전화상담
2. 농업인 교육 및 지도

## 제5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 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4”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문화관광사업소장

- 가. 정부시책 또는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및 무용의 공연
- 나.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 다.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제공
- 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전시
- 마. 기념행사 및 일반 문화행사
- 바. 국민관광지 시설물관리 및 시설운영

- 사. 국민관광지내 불법행위 및 행락질서 지도 단속
- 아. 문화예술회관, 국민관광지 시설물 등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운영
- 자. 국민관광지 및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허가
- 차. 입장권의 발매 및 입장료,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수납 관리
- 카. 군립도서관의 운영 관리
- 타. 기타 문화예술회관 및 국민관광지 설치목적에 따른 제업무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상하수도 사업소장

- 가. 상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나. 상하수도시설 확충
- 다.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 라. 정수의 가압송수 및 급수
- 마. 정수의 생산 및 수질관리 시험
- 바. 광역 5·6단계 및 임진강 광역상수도 업무 추진
- 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약수터 수질검사
- 아. 하수도 관리 및 차집관거 사업

## 3. 위생환경사업소장

- 가.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 나.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 발전
- 다. 분뇨처리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 라. 그 밖에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관계되는 사항

## 제6장 하부행정기관

### 제1절 읍·면

제1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 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관할구역)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읍·면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2절 회천읍 덕계출장소

제17조(설치) ①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회천읍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천 읍덕계출장소(이하 "덕계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출장소의 위치는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에 둔다.

제18조(관할구역)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회천읍 덕계리 전지역과 회정리 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 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출장소의 업무는 읍 행정 제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 양주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 치조례,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양주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립 도서관장의 사무는 문화관광사업소장이 승계한다.

제4조(보건지소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3항관련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주군 보건소의 관내이전및 통합보건지소의 설치운영시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보건지소를 둔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하고, 제5조 “군립도서관” 을 삭제하며, 제6호의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한다.

②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기획계장이 되며”를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로, “소관주무계 장”을 “소관주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중 “자치경영계장”을 “장기발전추진담당주사”로 한다.

④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간사는 자치경영계장이 되고”를 “간사는 장기발전추진담당 주사가 되고”로 한다.

⑤ 양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문화관광계장”을 “문화관광담당주사”로 한다.

⑥ 양주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의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하고 제3호의 “행정계장”을 “행정담당주사”로 한다.

⑧ 양주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⑩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하고,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하며, 제7조 제2항 중 “청소년업무담당계장”을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⑪ 양주군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⑫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담당주사”로 한다.

⑬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에 의한 별지1호 및 2호서식 중 “계장확인”을 “담당주사 확인”으로 한다.

⑭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실무계장”을 “실무 담당주사”로 한다.

⑮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부동산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⑯ 양주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⑰ 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⑱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하며, 제12조 제1항 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하고, 제3호중 “가정복지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⑲ 양주군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가정복지과”을 “사회복지과”로하고, 제4조 제1항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양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한다.

⑪ 양주군 도로 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담당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

⑫ 양주군 건축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2항 중 “담당업무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양주군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중 “재난 관리 계장”을 “재난 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⑭ 양주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검사 계장”을 “방문 보건 담당주사”로 한다.

⑮ 양주군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중 “보건 행정 계장”을 “보건 행정 담당주사”로 한다.

⑯ 양주군 농기계 수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 기술 센터 소장”으로 한다.

⑰ 양주군 농업 개발 센터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중 “양주군 농촌지도소”를 “양주군 농업 기술 센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 기술 센터 소장”으로 한다.

⑲ 양주군 군립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도서관 담당주사”로 한다.

㉙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하고, 제1조중 “법 제4조 제4항,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을 “법 제4조 제3항, 제4항,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으로하며, 제2조의 제목 “리의 명칭과 구역”을 “읍·면 및 리 명칭과 구역”으로하고, 동조 본문 중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읍·면 및 리 명칭과 관할구역”으로하며, 본조 다음중 “읍·면 명”을 “읍·면 명칭”으로한다.

(별표1)

## 통합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제5조 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양주군보건소 상수통합보건지소	양주군 남면 상수리	은현면, 남면, 광적면 일원
양주군보건소 장홍지소	양주군 장홍면 일영리	장홍면

(별표2)

##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선암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185	선암1·2리 도하1리 운암리, 하폐2리 용암리
상수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56	경신리, 상수1·2리 두곡리, 입암2리 광적면(효촌리, 덕도리)
만송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산154-2	삼송1·2리 만송1·2리
고읍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주내면 고읍리 84-4	고읍리, 만송3리 광사1·2리
연곡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백석면 연곡리 267-8	연곡1·2리 홍죽1·2리 광적(우고리, 비암1·2·3리)

(별표3)

##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제8조 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양주군 농업기술센터	광적면 광석리	
회천읍 농업인상담소	회천읍 덕정리	회천읍 전지역
주내면 농업인상담소	주내면 남방리	주내면 전지역
은현면 농업인상담소	은현면 선암리	은현면 전지역
남 면 농업인상담소	남 면 신산리	남 면 전지역
광적면 농업인상담소	광적면 가납리	광적면 전지역
백석면 농업인상담소	백석면 오산리	백석면 전지역
장홍면 농업인상담소	장홍면 일영리	장홍면 전지역

(별표4)

## 사업소의 명칭·위치 (제11조 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양주군 문화관광사업소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132
양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138-42
양주군 위생환경사업소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 일등경기, 일류한국 "

## 경 기 도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 1번지/전화(033)249-4093 (FAX 2228) 담당: 김종환  
 주민등록번호: 123-45678901234567890

문서번호 자치 12200 - 1252

시행일자 1998. 6. 23. (년)

(경유)

받 음 받는곳참조

참 조

선 결	는	는	지 시	
접	일자	6. 24	결 재	
	시간			
수	번호	8016/990	공	과 장
			리	제정
처	리 과			수
당	당 자			

## 제 목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

-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69('98. 6. 18)호의 이첩임
- 지침시달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호
- IMF제제이후의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저효율」의 지방행정 구조개혁이 어느때 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의 개혁차원에서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동 추진지침에 따라 자체개편안을 마련하고 '98년 감축목표량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완료 되도록 하기 바라며,
- 아울러 전 자치단체는 읍면동 기능전환 등을 감안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 총정원의 30% 감축목표를 앞당겨 완료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조직개편추진 지침 1부. 끝.

## 경 기 도 지 사

발는곳 : 러(시정·총무·내무과장)

" 일등경기, 일류한국 "

## 경 기 도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 0331)249-4094 / FAX 2223

자치행정과 과장 박광석 조직관리계장 황증각 담당 조철영

[Redacted]

문서번호 자치 12200 - 1739

시행일자 1998. 9. 3. (년)

(경유)

발 음 받는곳 참조 (양주)

참 조 시정(충무,내무)과장

선 결			지 시	
접	일자	1998. 9. 3. 07	결 재	가진동
시간				
수 번 호	번호	14496 / 1390		
처 리 과	과	총무과	공 급	동종500
당 당 자	자	정부	기 상	이종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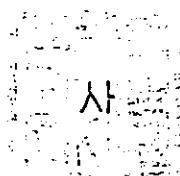
제 목 시군 조직개편(안) 협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승인사항 통보

1. 행정자치부 자제12200-294('98.8.28)호 및 시군관련대호(불임)와 관련입니다.
2. 귀 시군에서 협의요구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방침에 배치여부등을 경토하여 협의 통보하니 이를 조직개편안에 반영하여 시행토록하고,
3. 주민의견 수렴등이 필요하여 추진이 자연되고 있는 일부 과소등 통폐합 대상 지역도 정부방침의 기준대로 기구인력 감축을 확정한 시군에서는 즉시 조례·규칙 개정 절차를 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조직개편관련 승인(협의)사항 결과 1부.

2. 시군관련 문서대호 1부. 끝.

경 기 도 지



받는곳 려(제외, 수원, 구리)

## 조직개편 관련 승인(협의사항)

(양주군)

사안별	협의 내용	
	시·군 승인(협의) 으구내옹	시정 또는 승인·협의 조치결과
1. 기구감축		
(1) 본청	<p>&lt;4과 감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진흥과, 지적과, 측산과, 산림과 폐지</li> <li>○ 사회과+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li> <li>○ 민원실 신설</li> </ul>	○ 이견없음
(2) 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체제 유지 : 1과</li> </ul>	○ 이견없음
(3) 능률지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계 폐지(경영상달계)</li> </ul>	○ 이견없음
(4) 브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소 - 검사계 폐지</li> <li>○ 지소 - 5개지소 폐지</li> </ul>	○ 이견없음
(5)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립도서관 폐지 · 문화관광사업소 도서관계로 편제</li> </ul>	○ 이견없음
(6)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읍장 폐지 : 1부읍장(회천읍)</li> <li>○ 읍 과,계 폐지 : 1과 2계</li> <li>○ 부면장 폐지: 6 부면장</li> <li>○ 면의 계 : 1계(주내면 복지계)</li> </ul>	○ 이견없음
2. 정원감축	<p>○ 총 감축인원 : 77명 (12.39%)</p> <p>&lt;일반직&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급 : 5명(전체 30명의 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과장4, 회천부을장1</li> </ul> </li> <li>· 6급 : 15명(전체 113명의 1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면장6, 읍과장1, 계장8</li> </ul> </li> <li>· 7급이하 : 21명(전체 306명의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정직 : 3명</li> <li>- 연구·지도직 : 5명</li> <li>- 기능·고용직 : 28명</li> </ul> </li> </ul> <p>&lt;기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정직 : 3명</li> <li>- 연구·지도직 : 5명</li> <li>- 기능·고용직 : 28명</li> </ul>	○ 이견없음

## 관련 문서 대호

- 성 남 시 : 시정 12200-1807('98.8.11)
- 의정부시 : 총무 12200-1167('98.8.5)
- 안 양 시 : 시정 12200-1108('98.8.7)
- 부 천 시 : 총무 12200-2198('98.8.12)
- 광 명 시 : 총무 12200-1847('98.8.4)
- 평 택 시 : 총무 12200-948('98.8.5)
- 등두천시 : 총무 12200-1038('98.8.12)
- 안 산 시 : 총무 12200-1304('98.8.20), 1352('98.8.25)
- 고 양 시 : 총무 12200-1994('98.8.11)
- 과 천 시 : 총무 12200-1755('98.8.5)
- 남양주시 : 총무 12200-1366('98.7.28)
- 오 산 시 : 총무 12200-1363('98.8.5)
- 시 흥 시 : 총무 12200-1626('98.8.12)
- 군포시 : 총무 12200-2720('98.8.4)
- 의 왕 시 : 총무 12200-1986('98.7.29)
- 하 남 시 : 총무 13060-1912('98.8.6)
- 용 인 시 : 총무 12120-1289('98.8.6)
- 파 주 시 : 총무 12200-1948('98.8.17)
- 이 천 시 : 총무 12100-1418('98.8.13)
- 안 성 시 : 총무 12100-1064('98.8.1), 1248('98.8.28)
- 김 포 시 : 총무 12100-1148('98.8.4)
- 양 주 군 : 내무 12200-1720('98.8.3)
- 여 주 군 : 내무 12200-1775('98.7.29)
- 화 성 군 : 내무 12200-2301('98.8.5)
- 광 주 군 : 내무 12200-1421('98.7.30)
- 연 천 군 : 내무 12200-1529('98.8.3)
- 포 천 군 : 내무 12110-1930('98.8.5)
- 가 평 군 : 내무 12200-1610('98.8.3)
- 양 평 군 : 내무 12200-1908('98.8.3)



□ 본청 기구 조정계획안

(第70回 - 附錄) 37

< 현 행 >

군 수													기 구					설 카		설 카		
(지방정무직)													기 구	설 카		설 카		설 카				
부 군 수														제	2회 15회	55회	제	2회 15회	55회			
													(1회)	621	267	12	107	69	51	115		
기획 감사실	문화 정보실	내 무 파	사회 진 흥 파	재 무 파	지 적 파	사 회 파	환경 보호 파	가 정 복 지 파	산 업 파	축 산 파	지 역 경 제 파	산 림 파	건 설 파	도 시 파	주 택 파	민재 발 전 위 관 리 파						
(서4~5)																						
기획 자치 경영 예산 감사	공보 문화 관광	행정 사무	친홍 개발	부과1 부과2	부동산 관리 개발 정보	사회 위생	(행관) 환경 관리 환경 지도 청소	(행법) 가정 복지 부녀 복지 청소	(농) 농정 농사 농산물 유통 농지 관리	(축) 축산 조사 축산	(임) 지역 경제 공업 교통 행정	(토) 식수 보호	(로) 전력 하천 기반 조성 토목 도로 보수	(세도) 도시 계획 공영 개발 단축	(세간) 주택 건축 도로 보수	(세보) 주민 세단 관리 방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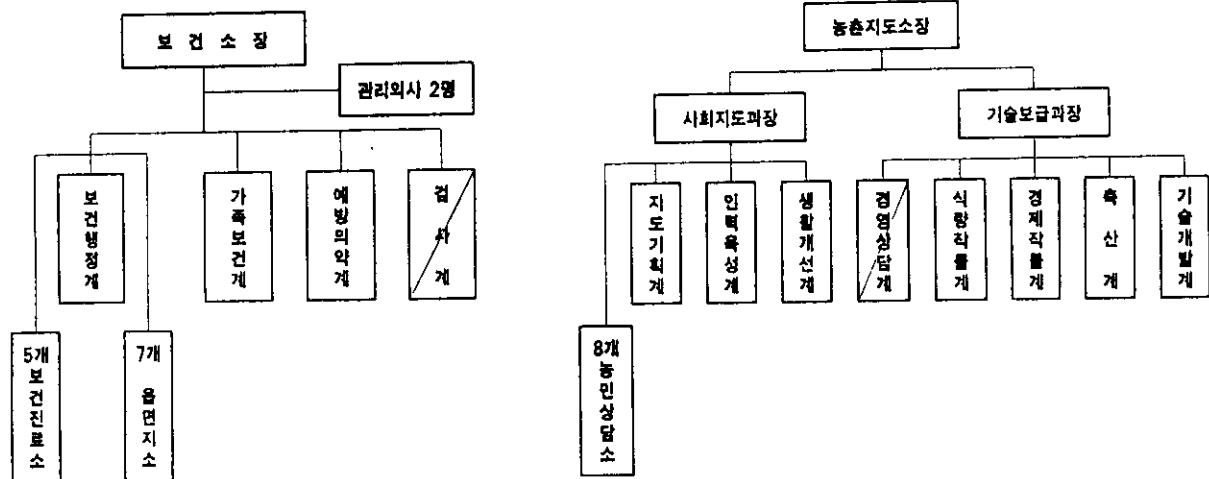
< 조정안 >

군 수													기 구					설 카		설 카	
(지방정무직)													기 구	설 카		설 카		설 카			
부 군 수														제	3회 10회	52년당	제	3회 10회	52년당		
													(1회)	544	242	11	91	59	40	10	
기획 감사실	문화 정보실	민 원 실	총 무 파	재 무 파	사 회 복 지 파	환경 보호 파	동 림 축 산 파	지 역 경 제 파	건 설 파	도 시 파	주 택 파	민재 발 전 위 관 리 파									
(서4~5)																					
기획 법무 · 장기 발전 수진 · 예산 · 감사	공보 문화 관광	민인 부동산 관리 개발 정보	행정 사무	국인운동 지도 정보 통신	군체 세무 조사 위생	(행법) 여성 복지 지도 청소1	(농) 농정 농사 농지 관리	(축) 산림 조사 축산	(임) 지역 경제 공업 교통 행정	(설) 전력 하천 기반 조성 토목 도로 노점 (기초화재)	(세도) 도시 계획 공영 개발 단축	(세간) 주택 건축 도로 보수	(세보) 주민 세단 관리 방무								

## □ 직속기관 기구개편계획(보건소, 농촌지도소)

(第70回 - 附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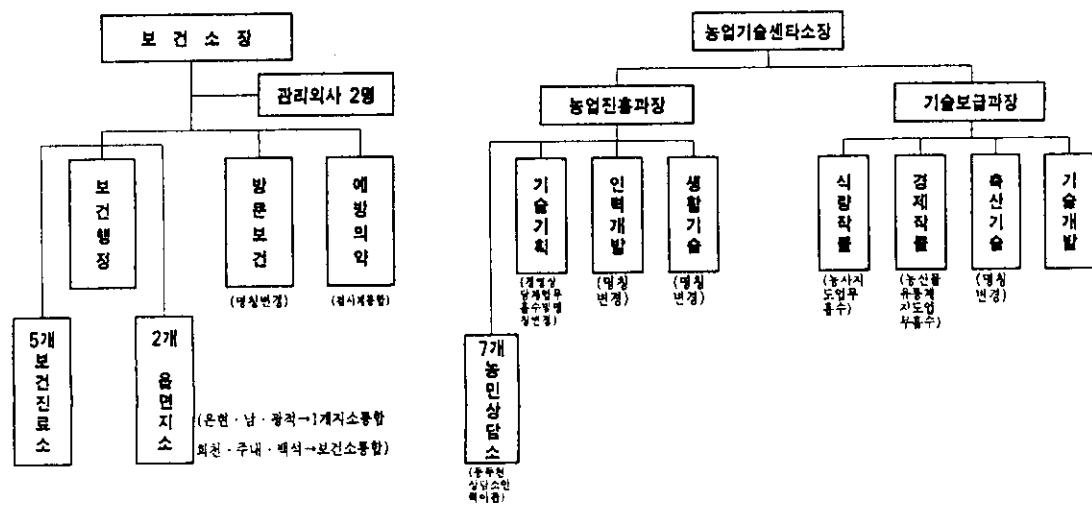
## &lt; 현 행 &gt;



⇒ 4과 7지소 5진료소

⇒ 2과 8개 8농민상담소

## &lt; 조정안 &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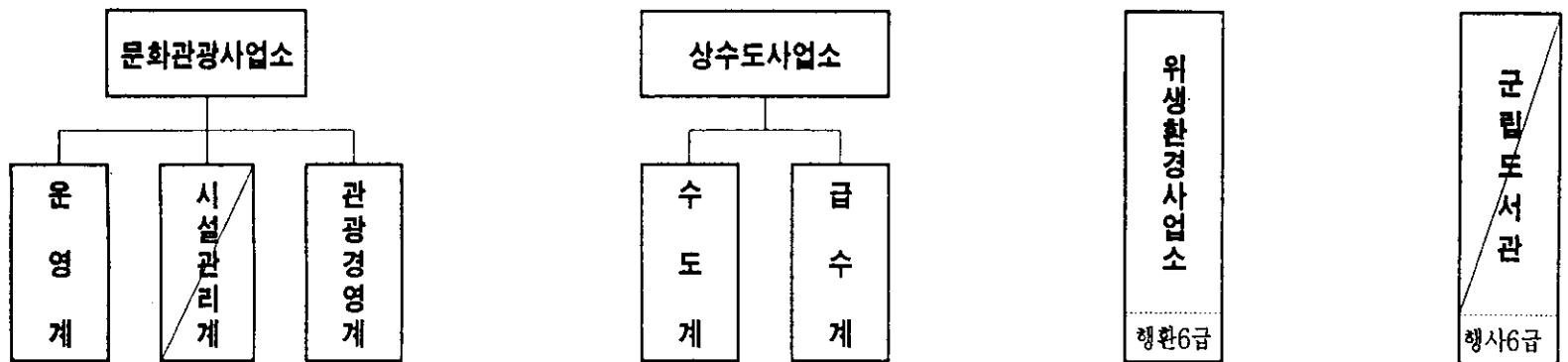


⇒ 3팀당 2지소 5진료소

⇒ 2과 7팀당 7농민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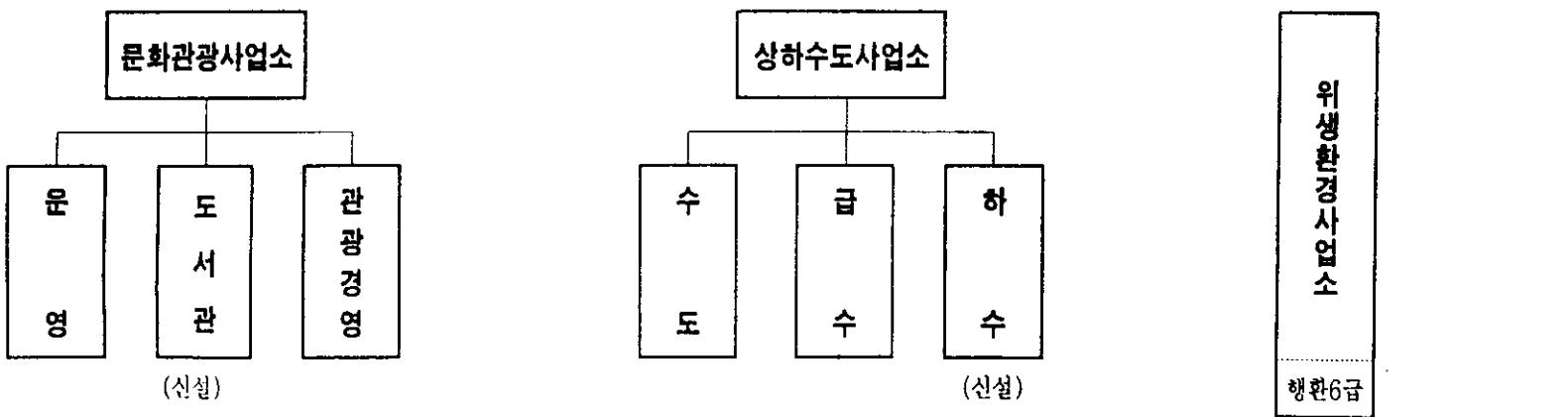
## □ 사업소 기구개편 계획

< 현 행 > → 4사업소 5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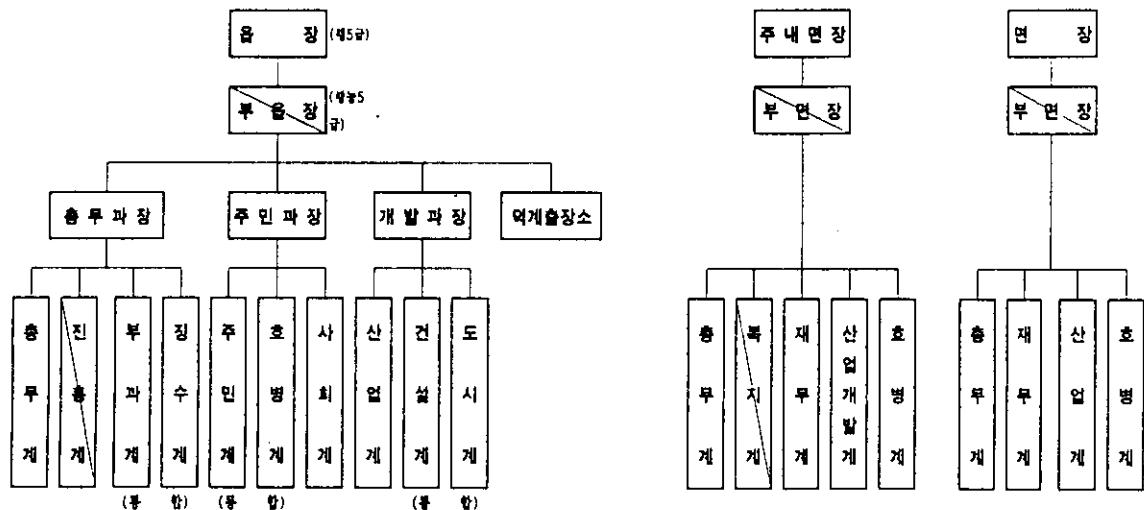
- 513 -

< 조정안 > → 3사업소 6담당



## □ 읍·면 기구개편 계획

&lt; 현 행 &gt; ~ 7읍·면 1출장소 3과 35개



&lt; 조정안 &gt; ~ 7읍·면 1출장소 2과 32팀당

